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24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신체활동 홍보·캠페인을 보강하고,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